

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처리기간 7일
이 의 신청인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	
	주 소	전화번호	
대리인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출원인	성 명	생년월일 (외국인은 국적)	
	주 소	전화번호	
대리인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전화번호	
사건의 표시	출원번호	출원일	
	출원 공고번호	출원 공고일	
담당 심사관			
신청 이유			
증거			
증거방법			

「식물신품종 보호법」 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산 립 청 장
국 립 종 자 원 장 귀하
국립수산과학원장

첨부서류	1.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서 부분 1부 2. 품종명칭등록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3.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작성방법

- 1. "출원인"란은 출원서에 적힌 것과 같게 적어야 합니다.
- 2. "신청 이유"란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를 구체적 증거를 들어 적어야 하며, 난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3. "증거"란에는 간행물 등의 증거에 의하여 출원된 품종이 품종보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,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4. "증거방법"란에는 "증거"란에 내용의 증거로 산림청장,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장에게 제출하는 간행물 등의 명칭을 적어야 합니다.
- 5. 그 밖의 사항은 「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르되, "신고인"을 "신청인"으로, "신고서"를 "신청서"로 보고 적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